

---

---

# I.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

---

## 1. 1. 제도의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 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 방식 적용: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과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 (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 2. 2. 적용범위(coverage)와 가입자 규모

- 적용범위

- 당연가입 대상자 :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병역 및 사회봉사 종사자, 일정소득 이상의 학생, 일부 자영업자(수공업자, 예술가, 작가, 농어민, 보모, 조산원 등), 실업 및 상병 급여 등 사회급여 수급자, 무급개호 종사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한 자 등
- 임의가입 대상자 : 당연가입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가입자규모

- 가입자는 인구성장율의 정체 및 경기체체 등으로 90년대 들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 2007년 현재 전체 경활인구의 약 80%가 가입자로 포괄

<표 44> 독일의 공적연금 가입자, 경활인구

년도	가입자수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대비 (%)
1962	18,612	26,845	69.33
1965	18,969	27,034	70.16
1970	19,568	26,827	72.94
1975	19,486	26,920	72.38
1980	21,570	27,935	77.21
1985	22,391	29,608	75.62
1990	24,128	31,699	76.11
1992	32,495	40,395	80.44
1995	31,430	40,445	77.71
2000	33,830	41,746	81.03
2003	33,357	42,103	79.22
2005	34,322	43,314	79.24
2007	34,852	43,466	80.18

\*해당 연도 1년간 한번이라도 의무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자 기준

\*1992년 전까지는 서독지역만, 이후부터는 동서독합산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website

### 3. 3. 재원조달

#### ○재정방식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당년도 지출은 전액 '보험료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됨.

#### ○ 보험료율 및 국고부담 수준

- 보험료율은 약 19.9%(07년)로 근로자의 경우 노사균등부담, 자영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전체 수입(노동자+직원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 약 25%

<표 45>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년도	노동자/직원 연금	광부연금*	년도	노동자/직원 연금	광부연금
1957-1967	14.0	23.50	1993	17.5	23.25
1968	15.0	23.50	1994	19.2	25.50
1969	16.0	23.50	1995	18.6	24.70
1970-1972	17.0	23.50	1996	19.2	25.50
1973-1980	18.0	23.50	1997	20.3	26.90
1981	18.5	24.00	1998	20.3	26.90
1982-1983(8.31)	18.0	23.50	1999(1.1-3.31)	20.3	26.90
1983(9.1)	18.5	24.00	(4.1부터)	19.5	25.90
1984	18.5	24.25	2000	19.3	25.60
1985	18.7	24.45	2001-2002	19.1	25.40
1985(6.1)-1986	19.2	24.95	2003	19.5	25.90
1987-1991(3.31)	18.7	24.45	2004	19.5	25.90
1991(4.1) -1992	17.7	23.45	2005 2007	19.5 19.9	25.90 25.90

○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보험료부과 소득의 상한선은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 수준, 하한선은 평균소득의 1/7수준으로 설정

4. 4. 급여

○ 급여산식

$\text{기본연금액(월)} = \text{개인별 소득점수} \times \text{연금실질가치유지액}$
---

- 개인별 소득점수 : 매년 전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개인의 상대 소득 수준을 생애기간에 걸쳐 합산한 값
  - ※ 중도 장애나 사망의 경우 사망 및 장애전까지의 가입기간과 장애발생시점에서부터 60세까지의 가입가능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 산정
- 연금실질가치유지액 :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연금액 가치 ('07 서독지역은 €26.27, 동독지역은 €23.09 적용)
- 표준연금수준(4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수준) : 47.2%('07년)
- 급여종류
  - 노령연금
    - 노령연금: 5년 이상 가입, 65세 도달 시 기본연금액의 100% 지급
    - ※ 이외에도 35년 이상 장기가입자, 20년 이상 장기가입 장애인 및 여성에 대해서는 65세 이전에도 연금수급 가능(단, 연금액은 그 만큼 감액됨)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가입자(5년 이상 보험료납부 필요) 및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그 유족배우자가 45세 이상이거나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상태 일 때. 사망한 피보험자 기본연금액의 60% 지급
    - 자녀연금: 부모 모두 사망한 18세미만의 자녀인 경우 피보험자 노령연금의 20%. 한쪽부모만 사망한 경우는 10%
  - 장애연금
    - 근로가능시간에 따라 완전장애(일 3시간 미만 근로가능)와 부분장애연금(일 3~6시간 근로가능)으로 구분
    - 장애발생전 최소한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최근 5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함.

- 완전장애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의 경우 50% 지급

○ 수급자 규모

- '07년 총 노령연금수급자는 1,729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2,080만명)의 83%가 연금수급

### 5. 5.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계층간 재분배

- 급여산식으로만 보면,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하여 소득계층간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 저소득 및 무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하고 이를 국고로 조달함으로써 상당한 재분배가 발생함.

<표 46> 독일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비교

	0.5	0.75	평균 <sup>1</sup> 소득	1.5	2	2.5
독일	47.3	45.8	45.8	45.8	37.6	30.1

자료: OECD 2005: Pension at a Glance.

### 6. 6. 기금운용

○ 기금규모

- 60년대 말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한 후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약간의 기금(월지출액의 12%)을 보유

○ 기금운용

- 기금운용 주체는 각 연금관리공단으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적립금을 운용함.
-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입 및 금전신탁, 가입자와 수급권자 주택자금대부, 복지시설 설치·운영, 독일 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최근 기금이 거의 고갈되어 유동성 확보차원의 투자만 이루어짐.

<표 47> 독일 공적연금제도 적립기금의 변화추이(1967-2005)

년도	보험료율(%)	적립기금규모 (백만 유로)	적립기금 /1개월 연금지출액
1967	14	24.8	
1970	17	24.0	8.1
1980	18	18.7	2.1
1990	18.7	35	2.6
1995	18.6	21.9	0.9
2000	19.3	27.8	1.0
2005	19.5	1.8	0.12

7. 7. 기초보장제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로 확대개편(2001년)
-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그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도입
  - 특별부조 제도의 급여수준은 일반 공적부조의 그것보다 15% 높게 설정
  - 부양의무자의 연간수입상한을 10만 유로(약 1억2천원)로 상향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 기초보장제도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공단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8. 8. 최근 개혁 동향

### ○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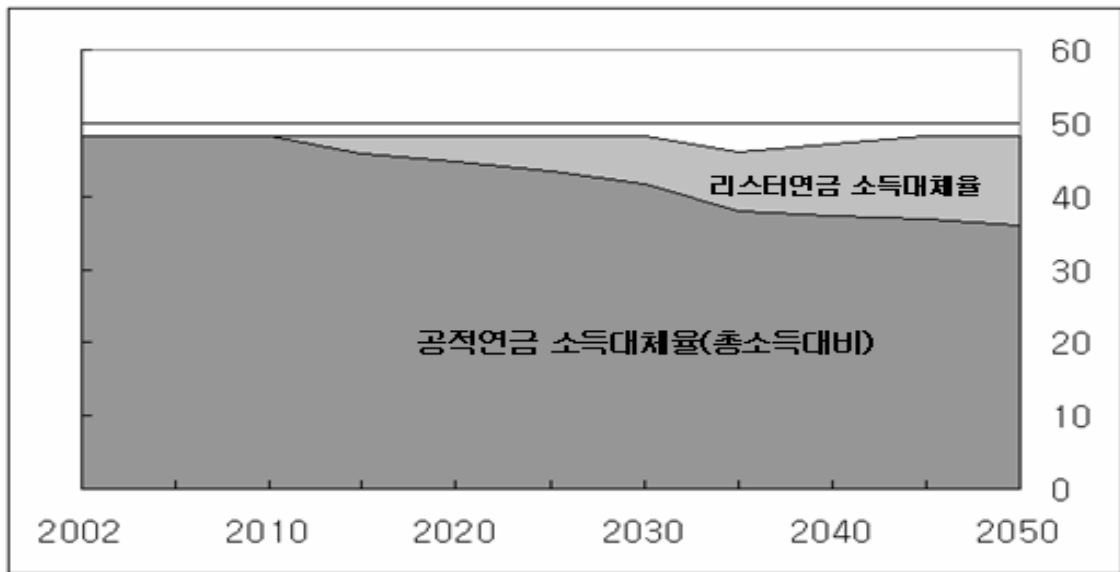
-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룸
-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이 이루어짐.

### ○ 2000~2001 연금개혁

- 장애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억제를 위한 조치(00년)
- 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 도입(01년)
- 국고보조의 인증제 개인연금(Riester Rente) 도입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 강구
- 개인연금은 '07년말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4정도할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공적연금만큼 노후보장을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7] 노후보장에 있어 리스터 개인연금의 역할



- 2004년 연금개혁(DB → 準DC로 전환)
  -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서 고정(2030년까지 22%)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는 장치(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 마련
  - 2030년까지 표준연금수준을 43%까지 유지하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과
- 2007년 연금개혁
  - 재정계산 결과 2004년 연금개혁 시에 설정된 보험료 및 연금수준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2012~202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